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6. 10. .

제출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새로운 법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 간 업무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평가분석업무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관에 따른 업무조정(안 제5조제2항)
-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규정(안 제9조제2항)
- 건설기계등록관련 업무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규정(안 제19조제12호)

3. 참고사항

- 도 자치행정과-48('06. 1. 3)호의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 지침 통보
- 도 자치행정과-4917('06. 5.17)호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관련 인력 배치 권고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정책사업 심사분석
7. 목표관리제 운영

제9조제2항중 제7호 내지 제16호를 제8호 내지 제17호로, 제17호 및 제18호를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, 동항에 제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
18.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

제19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차량등록사업소 관리 및 운영
- 나. 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- 다. 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- 라.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
- 마.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
- 바. 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
- 사. 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5조(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) ①(생략) ②(생략) 1~5. (생략) (신 설) (신 설) 8~14. (생략)	제5조(기획정보실에 두는 담당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5. (현행과 같음) 6. <u>시정주요업무 평가 및 주요 정책사업 심사분석</u> 7. <u>목표관리제 운영</u> 8~14. (현행과 같음)	평가분석담당 기획예산담당 관실로 소속 변경
제9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(생략) ②(생략) 1~6. (생략) (신 설) 7~16. (생략) (신 설) 17. (생략) 18. (생략)	제9조(건설도시국에 두는 과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6. (현행과 같음) 7. <u>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</u> 8~17. (현행 제7호 내지 제16호와 같음) 18. <u>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</u> 19. (현행 제17호와 같음) 20. (현행 제18호와 같음)	도시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법개정 시행 부동산거래업무 법개정 시행
제19조(소관사무) (생략) 1~11. (생략) 12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<u>차량관련 제증명 및 자가용 사용 신고</u> 다. <u>자동차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</u> 라. <u>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</u>	제19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 1~11. (현행과 같음) 1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자동차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u> 다. <u>건설기계 등록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</u> 라. <u>자동차 및 건설기계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</u> 마. <u>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</u> 바. <u>이륜차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</u> 사. <u>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</u>	건설기계등록 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가